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27차('19. 12.), 제28차('20. 12.), 제29차('21. 2.)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(H-2)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, 채소류,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(농산물산지유통센터), 식육 운송업, 광업(금속, 비금속, 광업지원서비스), 택배분류업(상하차)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(H-2)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에 29.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나. 활동범위 2)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에 토)부터 누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방문취업 (H-2)	토) 과실류 도매업(46311) ※ 단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‘농산물산지유통센터’에 한한다. 포) 채소류,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(46312) ※ 단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른 ‘농산물산지유통센터’에 한한다. 호) 물류터미널 운영업(52913) ※ 단, 한국표준직업분류(통계청 고시 제2017-191호)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(92101)에 한한다. 구)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(52941) ※ 단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‘식육’을 운송하는 업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 누) 광업 중, 금속 광업(06), 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(07), 광업 지원 서비스업(08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외국인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116